

2024년 데이터안심구역 활용 공동 경진대회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대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2024년 데이터안심구역 활용 공동 경진대회'라 칭한다. (이하 "본 대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대회는 데이터안심구역 지정기관 간 데이터 상호 공유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며, 데이터안심구역의 미개방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서비스와 연구 창출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및 활용 사례 발굴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운영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최기관"은 본 대회를 주최하는 정부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말한다.
2. "주관기관"은 대회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본 대회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주관하며, 전북특별자치도·국민연금공단,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공동 주관한다. 주관기관은 본 대회를 목적으로 주관기관 간 상호 제공 가능한 미개방데이터를 선별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기관별 상훈과 부상(상금) 등을 분담한다.
3. "후원기업 및 기관"은 본 대회에 상훈 및 데이터 등을 지원하는 기관 및 기업을 말하며, 본 대회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중부발전,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LGU+, , SKT, 신한카드, KCB, 나이스지니데이터가 후원한다.
4. "운영사무국"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및 데이터안심구역 홍보대행사에서 설치한다. 본 대회 운영사무국은 주관기관 실무담당자와 함께 전반적인 행사 운영 및 지원을 수행한다.
5. "참가팀"은 본 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1인 이상의 참가자를 의미한다.

제4조(대회실무협의회 구성 및 직무) ① 대회실무협의회는 대회 관련 운영상 주요 사안 등을 결정하기 위해 주관기관의 안심구역 실무 담당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 ② 대회실무협의회는 대회 관련 운영상 주요 사안 등을 협의한다.
- ③ 대회실무협의회의 장은 대회실무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④ 대회실무협의회의 장은 협의회 개최 시 호선으로 선정하며, 협의회 간사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한다.

- ⑤ 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실무협의회 개최 시 외부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위촉된 외부 전문가의 자격은 관련 심의안건에 한한다.

제5조(대회실무협의회 운영) ① 대회실무협의회는 대회 추진계획, 대회 규정, 평가기준 수립·확정, 대회 예선·본선 평가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조정 및 의결 등을 검토·심의한다.

-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실무 담당자가 심의 내용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대회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 ① 대회평가위원회란 예선, 본선 평가 및 대회 전반적인 평가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 ② 예선 평가위원회 위원은 대회 주관기관에서 위촉하며,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 관련 내·외부 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한다.
- ③ 본선 평가위원회 위원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위촉하며,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 관련 내·외부 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평가위원 위촉 시 주관기관은 관련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으며, 이때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이를 검토하여 위촉할 수 있다.
- ④ 대회평가위원장은 대회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 ⑤ 대회평가위원회의 장은 위원회 개최 시 호선으로 선정하며, 위원회 간사는 주관기관에서 수행한다.

제7조(대회평가위원회 운영) ① 대회평가위원회는 대회실무협의회를 통해 개발 및 확정된 평가 기준을 기반으로 대회 예선(서면), 본선(기술·발표) 평가를 수행하여, 평가 결과를 확정한다.

- ② 예선 평가위원회 운영은 주관기관별로 운영한다.
- ③ 본선 평가위원회 운영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한다.
- ④ 평가위원은 대회 참여 신청자의 학교, 기업, 기관 등과 동일 소속 관련될 경우 해당 평가 건에 대한 사항은 심사평가를 할 수 없다.

제 2 장 대회 참가신청 및 자격요건

제8조(대회 참가자격) 본 대회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대회의 공고문을 따른다. 단, 본 대회 주최기관 및 주관기관, 후원기업·기관 소속의 참가자는 제외된다.

제9조(참가자격 상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회 중 언제라도 참가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1. 제21조의 8항(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2. 참가팀의 사정으로 대회 참가취소를 통보한 경우
3. 참가팀 중 참가 마감일까지 필수 서류 누락한 경우

제10조(참가팀의 책임과 역할) ① 참가팀은 대회의 원활하고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대회에 임할 것
2. 참가팀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기 위해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대회 운영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뒤 참여하며, 대회 전반에 걸쳐 이를 준수할 것

② 참가팀을 통솔하는 대표자는(“팀대표”) 대회에 참가하는 팀원이 대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 3 장 대회의 개최 및 운영

제11조(대회공고) 주관기관은 중앙행정기관장의 명의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담은 공고를 시행할 수 있다.

1. 대회목적
2. 대회 추진방법
3. 근거법령 및 관련 규정
4. 대회 진행방식
5. 추진일정
6. 상훈 및 우수 참가팀 특전
7. 참가방법

제12조(신청접수) ① 참가팀은 대회 공고문에서 정한 접수기간 내 지정된 신청방법을 통해 대회 참가 신청을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회 참가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대회 참가서약서
4. 아이디어 제안서

② 참가 신청 접수는 최소 마감기한 1~2일 전에 제출하는 것을 권장하며, 마감 기한에 임박하여 제출 시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책임은 참가팀에게 있다.

③ 평가 과정에서 필요시 제출된 결과물 이외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설명회) ① 참가팀의 대회 공고내용에 대한 안내 및 참가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개 또는 비공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본 설명회는 목적의 달성을 위해 대회 전반에 걸쳐 여러 회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대회의 개최) ① 주관기관은 대회 공고문에 따라 대회를 개최하되, 참가팀의 평가방법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적인 문서 등을 배포할 수 있다.

② 참가팀은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고문 및 부속서류, 제21조에서 정하는 확인사항 등을 대회 신청 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참가팀이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참가팀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제15조(본선 진출팀 대상 교육) 대회 주관기관은 본선 진출팀 대상으로 데이터안심구역의 활용도 제고 및 데이터 분석능력 향상 등을 위해 사전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대회의 중단) ① 대회실무협의회는 대회 중 대회를 진행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 발생 시 해당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회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② 대회실무협의회장은 대회를 중단하려는 경우 중단사유와 향후 일정 등을 참가팀에 알리고, 대회실무협의회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대회실무협의회장은 발생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회실무협의회 외에 추가적인 전문가의 섭외를 통해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대회실무협의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대회 중단 또는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⑤ 대회실무협의회는 문제가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회실무협의회 의결에 따라 해결에 필요한 만큼 대회를 중단 또는 연기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대회기간은 대회의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변동될 수 있다.

제17조(평가기준) ① 평가는 공고문 및 부속서류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② 평가는 대회평가위원회의 고유한 권한이며, 평가기준과 관련된 해석의 논란이 발생할 경우 대회평가위원회 장의 결정에 따른다.
- ③ 평가는 대회실무협의회 의결에 따른 기준으로 시행하며 평가위원회를 통한 세부 평가내용 및 과정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④ 대회 전반에 걸쳐 평가 기준의 부득이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회실무협의회 의결결과를 통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 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 시 대회평가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량적 평가 결과 외에 기술적 난이도 고려 등 추가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18조(평가방법) ① 평가는 예선과 본선으로 운영되며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주관기관별 예선(서면)평가, 대회평가위원회의 본선(기술·발표) 평가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 1. 예선은 서면평가로 진행되며 대회실무협의회에서 수립한 평가 기준에 따라 주관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각 주관기관은 상위 2개팀을 선정하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 본선 진출팀을 통보한다. 이때 기관별로 예비 후보팀을 선정하여 본선 진출 팀 중에서 제9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상실한 팀이 생길 경우 차순위 팀을 본선 진출 팀으로 통보한다.
 - 2. 본선은 기술평가와 발표평가로 이루어지며, 주관기관에서 예선 결과 상위 2팀을 선정하여 본선 진출팀을 통보하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대회평가위원회를 통해 진행한다.
 - 3. 기술평가는 평가위원 1인이 각 기관 안심구역을 방문하여 참가팀들이 제출한 결과보고서의 성능, 분석·시각화 결과가 해당 데이터 및 분석도구를 바탕으로 도출된 보고서인지 적격성을 검증한다.
 - 4. 기술평가 후 전체 본선 진출팀을 대상으로 발표평가를 진행하며, 대회평가위원회가 심사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및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제3호에 의한 적격성 검증 결과 부적격으로 평가받은 본선 진출팀은 발표평가 시 추가 자료 제출 및 추가 질의를 통해 적격성 재검증을 요청받을 수 있다. 검증이 불가능한 참가팀은 수상 팀에서 제외되고 그 결과에 따라 상훈 개수는 조정될 수 있다.
- ② 주관기관은 평가위원에게 소정의 전문가 활용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본선에 진출한 참가팀은 주관기관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불응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참가팀에게 있다.

제19조(이의신청) ① 참가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작

성하여 대회실무협의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1. 불공정한 대회 운영의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
 - 2. 평가위원 등 주관기관의 불공정한 대회진행의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
- ② 참가팀은 대회 결과가 공시되기 전 주관기관이 안내하는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대회 결과가 공시된 후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③ 이의신청과 관련된 안건은 대회실무협의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0조(대회결과의 공시) 대회 주관기관은 대회 결과를 대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하며, 본선 진출팀의 수상 결과를 제외한 내용은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4 장 유의사항

제21조(참가팀 확인사항) ① 참가팀은 공고문과 부속서류 등을 참조하여 대회에 참가한다.

- ② 대회의 결과물로 제출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참가팀에게 있으며, 주최·주관·후원기관은 본 대회의 성과확산 등을 위하여 본 창작물을 가공 또는 배포하거나 홍보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③ 제출한 대회 관련 제출물은 선정 여부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는다.
- ④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수상한 팀(개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⑤ 개인이 아닌 팀으로 참가하여 수상할 경우, 상금은 대표자에게 지급되며 상금의 분배와 관련된 사항은 참가자 상호 간 협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으로 주최 및 주관기관, 운영사무국은 이에 관여하지 않음
- ⑥ 아래의 경우 수상 이후라도 수상이 취소되거나 상금이 회수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팀 또는 수상자 본인에게 있다.
 - 1. 자신이 속한 조직 등의 사업 아이디어 및 사업 중이거나 사업화를 위해 준비 중인 아이디어로 공모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 2. 참가팀이 제출한 아이디어 및 수상작에 대한 제3자의 저작권, 특허권, 초상권 등의 지식재산권 및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 한 경우 등
- ⑦ 주관기관은 참가팀이 제출한 아이디어 제안서가 다른 기관이 주최·주관한 대회 등에 우선 선정되었거나, 알려진 아이디어 제안서일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⑧ 모든 참가팀은 다음 각 호의 불공정 행위 시 대회평가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따라

실격처리하거나, 본선 진출 및 입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1. 대회 기간 동안 전자적·물리적, 혹은 그 외의 방법으로 다른 참가팀의 분석 및 발표를 방해한 경우
2. 대회에서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참가팀 간에 결탁하였거나, 결탁을 시도한 경우
3. 대회에서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여러 팀에 참여한 경우
4.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정보 탈취, 분석 공간의 훼손이나 오류 발생 시도 등의 행위를 한 경우
5. 그 외 대회 운영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